

의안번호	2202114
의 퇴 인	이원택의원
회 답 일	2024. 7. 30.
추 계 번호	24B224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3년마다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억 1,6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억 1,600만원(연평균 2,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2조의2)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현행(A) (5년마다)	—	—	116	—	—	116	23
	개정안(B) (3년마다)	116	—	—	116	—	232	46
추가재정소요 (C=B-A)		116	—	-116	116	—	116	23

주: 1.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5년 → 3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u>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u>(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3년마다</u>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3의2. <u>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u>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u>농업재해보험심의회</u>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손해평가 방법(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과 보험료율의 산정을 포함함)과 절차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u>3분의 1 이상</u> 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제4항) 4.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당해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의무규정
4	안 제5조제2항(보험목적물)	정부는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6조제3항 신설(보상의 범위 등)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제2조의3제1호에 의한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함(제1항)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7조의2 신설(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대책교육 등)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1항)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을 이수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함(제2항)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감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의무·재량규정
7	안 제11조(손해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8	안 제19조(재정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산정의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 단위의 누적 손해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액 경감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9	안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1항)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u>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u>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기본계획 수립주기 변경 － (현행) 5년 → (개정안) 3년
2	안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추가적으로 심의하는 사항, 즉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과 보험료율의 산정을 포함한 손해평가 방법’은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정부위원회의 일반적인 심의 안전에 비해 고도의 보험계리적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농어업재해 피해율과 보험료율의 산정을 포함한 손해평가 방법 심의를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용역 또는 조사·분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해당 비용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안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	- 미대상 － 현재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총 정원 21명(공무원 7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산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당해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하는 경우, 민간위원(14명)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구성하게 되므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구성 현황> <table><tr><td>위원장 (임명권자)</td><td>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당연직(법 제3조제3항)</td></tr><tr><td>총 위원 수</td><td>12명</td></tr><tr><td>공무원 (총 7명)</td><td>농식품부 차관, 농정국장, 기재부, 금융위, 해수부, 행안부, 산림청 공무원 등 각 1명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제2·3호)</td></tr><tr><td>민간위원 (총 14명)</td><td>(직 중) 농업인·시민 단체 4명, 관련기관 및 학계 전문가 5명, 정책 관련 유관단체 임직원 및 소속회원 5명</td></tr></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4.6.	위원장 (임명권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당연직(법 제3조제3항)	총 위원 수	12명	공무원 (총 7명)	농식품부 차관, 농정국장, 기재부, 금융위, 해수부, 행안부, 산림청 공무원 등 각 1명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제2·3호)	민간위원 (총 14명)	(직 중) 농업인·시민 단체 4명, 관련기관 및 학계 전문가 5명, 정책 관련 유관단체 임직원 및 소속회원 5명
위원장 (임명권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당연직(법 제3조제3항)										
총 위원 수	12명										
공무원 (총 7명)	농식품부 차관, 농정국장, 기재부, 금융위, 해수부, 행안부, 산림청 공무원 등 각 1명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제2·3호)										
민간위원 (총 14명)	(직 중) 농업인·시민 단체 4명, 관련기관 및 학계 전문가 5명, 정책 관련 유관단체 임직원 및 소속회원 5명										
4	안 제5조제2항 (보험목적물)	—	• 미대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 보장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중이며, 개정안은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농작물재해보험) ('07) 10 → ('08) 15 → ('09) 20 → ('10) 25 → ('11) 30 → ('12) 35 → ('13) 40 → ('16) 50 → ('19) 62 → ('23) 70 → ('24) 73품목 — (가축재해보험) ('07~'08) 11 → ('09) 13 → ('10) 14 → ('11) 15 → ('12~'24) 16품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15) 21 → ('16) 24 → ('17) 27 → ('18~'24) 28품목								
5	안 제6조제3항 신설(보상의 범위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재해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그러나 향후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어가 수, 해당 농어가 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금 수령 여부, 이에 따른 재해피해 보상금 지원 여부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6	안 제7조의2 신설(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대책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정부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에 관한 교육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육 등)		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제1항), 교육을 이수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감면을 지원하는(제2항)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그러나 현시점에서 교육대상자 수 및 교육비용, 교육이수자가 가입한 보험상품 및 해당상품에 대한 보험료 감면을, 정부지원 규모 등을 구체화할 수 없고,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과 보험료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4항)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7	안 제11조(손해평가 등)	—	• 미대상: 현재 손해평가인에 대해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교육 실시중이며, 개정안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법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 교육을 실시중이며,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table><tr><th>구분</th><th>교육내용</th></tr><tr><td>농업재해보험</td><td> •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농업재해보험 사업현황 •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 유형별 보상사례 •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td></tr><tr><td>양식수산물재해보험</td><td>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보험상품 및 약관 •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td></tr></table> 자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서 발췌 정리	구분	교육내용	농업재해보험	•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농업재해보험 사업현황 •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 유형별 보상사례 •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보험상품 및 약관 •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구분	교육내용								
농업재해보험	•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농업재해보험 사업현황 •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 유형별 보상사례 •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보험상품 및 약관 •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8	안 제19조(재정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정부가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 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행정구역 및 권역 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을 위한 지원기준, 대상지역 등을 구체화할 수 없어 지원비용 및 보험료 추가지원 소요예산을 추계하는 데 한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계가 있음 － 또한 현행법은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19조제4항),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에 관한 하위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9	안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	• 미대상 － 현재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중으로, 손해평가인력 전문성 제고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업무 수행중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농어업재해보험 사업 운영비 일부를 지원중이며, 운영비에는 보험 상품 개선 및 손해평가사 역량 제고 등의 사항 포함 (단위: 백만원) <table><tr><th>소관</th><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농림축산식품부</td><td>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1038-305)</td><td>7,886</td><td>7,912</td><td>7,951</td></tr><tr><td>해양수산부</td><td>양식어업재해보험(3443-300) －양식보험 사업관리위탁</td><td>403</td><td>403</td><td>403</td></tr></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4.1.	소관	사업명	2022	2023	202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1038-305)	7,886	7,912	7,951	해양수산부	양식어업재해보험(3443-300) －양식보험 사업관리위탁	403	403	403
소관	사업명	2022	2023	202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1038-305)	7,886	7,912	7,951														
해양수산부	양식어업재해보험(3443-300) －양식보험 사업관리위탁	403	403	403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운영중
 - (농업재해보험)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운영중이며,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에 기여
 -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
- ※ [참고자료 1]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 도입현황,
 [참고자료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현황,
 [참고자료 3]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참고

[표 2]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구분	종류	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율 (국비)
농업재해보험 (총 97품목)	농작물재해보험 (73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자, 콩, 양파, 벼(일반벼/조식료용벼), 배추, 양상추 등	순보험료의 33~60%
	가축재해보험 (16품목)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영업보험료의 50%
	농업수입보장보험 (7품목)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가축질병치료보험 (1품목)	소	영업보험료의 50%
양식어업재해보험 (총 28품목)	본사업 (17품목)	넙치, 전복, 다시마, 굴, 홍합 등	순보험료의 50%
	시범사업 (11품목)	김, 멍게, 뱀장어, 미역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농업재해보험 및 양식어업재해보험 예결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351,871	353,707	508,820	434,451 ¹⁾	607,729	531,801	535,584
		가축재해보험	119,093	117,708	119,093	113,684	119,093	110,553	112,220
		농업수입보장보험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8,100
		가축질병치료보험	2,000	1,549	2,000	1,778	1,600	1,593	1,200
		소계	475,464	475,464	632,413	552,413	730,922	646,447	657,104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		83,691	83,691	109,791	109,791	98,811	98,811	98,811
	소계		559,155	559,155	795,464	662,204	829,733	745,258	755,915
해양수산부	양식어업재해보험	순보험료지원	16,267	16,267	15,295	12,443	13,899	13,899	15,285
		운영사업비지원	11,869	11,792	9,603	8,891	8,727	8,124	8,422
		양식보험사업관리위탁	153	230	403	443	403	356	403
	소계		28,289	28,289	25,301	21,777	23,029	22,379	24,110

주: 1) 농특회계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미집행 부분에 대해 '23년 이월 및 집행 완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 본 추계는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추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2022년 연구용역(비용 1억 1,600만원)을 수행하여 2023년에 각각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45.5백만원

－ 해양수산부, 「제1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70백만원

[표 4]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계획명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23~’27)(2023.1.)	제1차(‘23~’27년) 양식수산물재해보 험 발전 기본계획 (2023.6.)
용역수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용역수행기간	2022. 5. 3. ~ 11. 26.	2022. 7. 7.~2023. 1. 31.
용역비	45.5백만원	7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현행 기본계획이 2023년에 수립된 것을 고려하여 다음 기본계획은 3년 후인 2026년부터 3년마다 수립되고, 기본계획 수립 1년 전(2025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¹⁾도 별도의 비용 없이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3년마다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억 1,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5]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현행 (A)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	—	116	—	—	116
개정안 (B)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116	—	—	116	—	232
추가재정소요 (C=B-A)		116	—	-116	116	—	116

주: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5년 → 3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안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의2.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 도입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²⁾

□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대상 품목	누계
2001	<u>사과, 배</u>	2
2002	<u>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u> (온주밀감류/만감류)	6
2006	<u>뽕은감</u>	7
2007	<u>밤, 참다래, 자두</u>	10
2008	<u>감자</u> (봄감자(경북, 충남)/고랭지감자/가을감자), <u>콩, 양파, 고추, 시설투(수박)</u>	15
2009	<u>고구마, 옥수수</u> (일반옥수수/조사료용옥수수), <u>마늘, 매실, 벼</u> (일반벼/조사료용벼)	20
2010	<u>시설투(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u>	25
2011	<u>시설투(꽃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u> <u>복분자</u> (고창, 정읍, 순창, 함평, 담양, 장성)	30
2012	<u>인삼, 시설투(멜론, 파프리카), 오디</u> (전북, 전남, 상주, 안동), <u>차</u> (보성, 광양, 구례, 하동)	35
2013	<u>시설투(부추, 시금치,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u>	40
2014	<u>시설투(배추, 가지, 파)</u>	43
2015	<u>시설투(무, 백합, 카네이션)</u>	46
2016	<u>밀, 시설투(미나리), 오미자, 양배추</u> (제주, 무안)	50
2017	<u>시설투(쑥갓), 무화과</u> (영암, 신안, 목포, 무안, 해남), <u>유자</u> (고흥, 완도, 진도, 거제, 남해, 통영)	53
2018	<u>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메밀</u> (전남, 제주), <u>브로콜리</u> (제주, 충북)	57
2019	<u>배추</u> (고랭지 / 봄배추 - 평창, 영양, 해남 / 월동 - 해남 / 가을 - 괴산, 해남, 영양), <u>무</u> (고랭지 / 가을 - 고창, 영암, 무안, 예천, 나주, 당진, 홍천, 충주 / 월동 - 제주), <u>당근</u> (제주), <u>단호박</u> (경기, 제주), <u>파</u> (대파 / 쪽파·싹파 - 아산, 보성)	62
2020	<u>호두</u> (김천), <u>팥, 시금치,</u> <u>보리</u> (해남, 보성, 김제, 군산, 밀양), <u>살구</u> (영천)	67
2023	<u>귀리</u> (강진, 해남), <u>시설투(감자)</u> (김제, 부안), <u>양상추</u> (횡성, 평창)	70
2024	<u>두릅</u> (순창, 광양, 순천, 하동), <u>블루베리</u> (순창, 담양, 평택, 상주, 의성, 영동), <u>수박</u> (봉화, 안동, 영주, 예천, 고창, 진안)	73
합계	73개 품목 (85개 상품)	

* 밑줄 친 품목은 본사업 품목임

2)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2023.1. 등)

□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대상 축종	누계
1997	소	1
2000	돼지, 말	3
2002	닭	4
2004	오리	5
2005	꿩, 메추리	7
2006	칠면조, 사슴	9
2007	타조, 거위	11
2008	양	12
2009	꿀벌	13
2010	토끼	14
2011	관상조	15
2012	오소리	16
합계	16개 축종	

□ 수입보장보험

연도별	대상 품목	누계
2015	콩, 포도, 양파	3
2016	마늘	4
2017	고구마, 가을감자	6
2018	양배추	7
2024	보리, 옥수수	9
합계	9개 품목	

[참고자료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³⁾

□ 보험 대상품목(총 28개)

- **본사업 품목(17):**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송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17):** 전국
- **시범사업 품목(11):** 보험의 효용성·실시 가능성 등 검증을 위해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

<시범사업 품목별 사업지역 현황>

품목명	사업지역
김	전남 해남군,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장흥군, 목포시, 무안군, 진도군, 함평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보령시/ 경기 안산시, 화성시/ 전북 군산시, 부안군/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군, 강화군(단, 팽생이 모자반 및 유빙 특약은 특정지역만 가입 가능)
멍게	경남 통영시, 남해군, 고성군, 거제시/ 강원 고성군, 삼척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제주도/ 전남 여수시
미역	전남 고흥군, 진도군/ 부산 기장군/ 경남 통영시, 거제시
뱀장어	전남 영광군, 함평군, 강진군, 무안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영암군, 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해남군, 장성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익산시/ 충북 충주시
송어	강원 영월군, 정선군, 춘천시, 평창군, 삼척시, 철원군, 횡성군,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경북 구미시, 상주시/ 충북 보은군,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괴산군/ 경기 가평군
미더덕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오만둥이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터봇	제주도
메기	충남 홍성군,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장수군, 임실군
향어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전남 함평군
전복종자	전남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3)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제1차(‘23~’27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2023. 6. 등)

[참고자료 3]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업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 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636,727	547,183	52.0	1,039,681	506,116	48.7%	130,793	273,302	38.9%	129,469	12.5%	163.3	20.3	215,368	1,004,249
2022	609,793	512,995	49.9	949,656	466,677	49.1%	116,121	247,167	38.3%	119,692	12.6%	155.7	19.6	162,232	555,777
2021	594,250	497,884	49.4	848,524	417,546	49.2%	100,073	213,311	36.9%	117,595	13.9%	142.8	19.8	172,822	573,989
2020	550,174	440,173	45.0	722,223	355,306	49.2%	84,360	180,563	36.7%	101,994	14.1%	131.3	18.5	225,240	1,015,827
2019	456,024	339,582	38.8	511,146	252,154	49.3%	62,068	123,237	36.3%	73,688	14.4%	112.1	16.2	190,492	898,048
2018	376,593	275,133	32.9	550,149	271,334	49.3%	57,973	126,858	33.6%	93,984	17.1%	146.1	25.0	85,099	534,450

○ 가축재해보험

(단위: 천두,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두수 (천두)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영업 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천두당 영업 보험료 (만원)	천두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290,820	36,333	94.4	214,047	103,491	48.3%	8,071	18,787	12.5%	83,697	39.1%	73.6	28.8	41,967	164,786
2022	288,293	34,023	94.7	219,002	105,474	48.2%	7,929	18,948	12.3%	86,651	39.6%	76.0	30.1	39,181	167,904
2021	285,075	22,791	93.7	230,330	110,741	48.1%	7,859	17,770	11.1%	93,960	40.8%	80.8	33.0	34,600	146,247
2020	276,486	21,760	92.8	225,706	107,528	47.6%	7,373	16,697	10.7%	94,108	41.7%	81.6	34.0	34,739	147,730
2019	284,785	21,448	93.3	214,860	105,619	49.2%	6,915	15,187	10.3%	87,139	40.6%	75.4	30.6	35,996	174,302
2018	278,139	19,706	93.0	187,405	92,003	49.1%	5,400	12,470	9.5%	77,531	41.4%	67.4	27.9	32,356	239,275

○ 농업수입보장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 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1,233	1,652	3.3	4,299	2,149	50.0%	488	1,185	38.9%	476	11.1%	348.7	38.6	1,507	5,858
2022	1,141	1,566	3.2	4,021	2,011	50.0%	473	1,093	38.9%	445	11.1%	352.4	39.0	1,313	4,020
2021	1,007	1,457	3.0	3,946	1,973	50.0%	442	1,029	37.3%	502	12.7%	392.1	49.8	1,024	2,460
2020	1,561	2,006	4.2	6,638	3,319	50.0%	846	1,624	37.2%	849	12.8%	425.2	54.4	1,153	3,451
2019	1,207	1,643	3.7	6,579	3,290	50.0%	776	1,686	37.4%	828	12.6%	545.2	68.6	1,662	10,912
2018	2,121	1,979	7.3	7,291	3,646	50.0%	821	1,592	33.1%	1,233	16.9%	343.8	58.1	5,595	49,763

○ 가축질병치료보험

(단위: 천두,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두수 (천두)	가입 농가수 (호)	보험가입 률 (%)	영업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¹⁾			자부담		천두당 영업보험 료(원)	천두당 농가부담보 험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 금 (B)	국고지원 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부 담 (E)	농가부 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39	748	7.3	3,182	1,591	50%				1,591	50%	81,747,021	40,873,510	33,503	2,862
2022	44	872	8.3	3,555	1,778	50%				1,778	50%	80,549,214	40,274,607	32,129	2,826
2021	41	849	9.1	3,096	1,548	50%				1,548	50%	76,300,873	38,150,428	27,873	2,502
2020	32	687	7.1	2,501	1,250	50%				1,250	50%	79,154,851	39,577,238	19,700	1,715
2019	31	573	13.3	2,268	1,134	50%				1,134	50%	72,942,016	36,483,340	7,796	717
2018	7	176	6.8	537	268	50%				268	50%	71,677,662	35,838,838	63	7

주: 1)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시범사업지역 지자체와 가입영업점(농축협)에서 지방비를 직접 정산하여 보험사업자가 지방비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단위: 호, 백만원, 신계약 기준)

연도	가입 어가수 (호)	보험가 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순보험료)		지방비 지원 ¹⁾			자부담 ²⁾		어가당 순보험료 (천원)	부가 보험료 (국고지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 지원금 (B)	국고 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어가부담 (E)	어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2,936	39.8	29,339	14,728	50	3,463	5,847	32	5,301	18	1,806	6,225	238	10,558
2022	2,733	37.0	24,349	12,424	51	2,803	4,903	32	4,219	17	1,544	4,638	377	9,564
2021	2,194	29.7	20,079	10,013	50	—	—	—	10,066	50	4,588	3,749	238	10,762
2020	2,682	28.0	24,557	12,278	50	—	—	—	12,279	50	4,578	3,642	806	33,195
2019	3,744	39.1	32,820	16,410	50	—	—	—	16,410	50	4,383	6,380	2,617	123,774
2018	4,250	44.3	41,981	20,990	50	—	—	—	20,991	50	4,939	10,359	1,275	75,775

주: 보험료는 환급금이 차감된 금액이며, 보험금은 지급준비금은 제외된 금액임

1) '22년 이전 지방비지원의 경우 지자체와 회원조합이 수기 정산하여 실지원금 파악이 어려우며, '22년 이후 국고지원과 함께 즉시 지원하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완료로 통해 실지원금 확인 가능

2) '22년 이전 자부담액은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임